##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03. 11. 15(토) 자치행정위원회

#### 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3년 10월 24일 이천시장 제출

나. 회 부 일 자 : 2003년 10월 28일

다. 상 정 일 자 : 제65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

제3차(2003. 11. 14) 자치행정위원회 상정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·답변, 의결

##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자치행정국장 김종화)

#### 가. 제안이유

-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
- 농업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한 농업조사위원회를 현재 시·읍·면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읍·면·동 기능을 민원·복지업무 중심으로 전환함에 따라 동위원회를 시에 설치하며
- 지방세법개정 및 인용법령 개정에 따른 자구 수정 및 인용법령을 변경 하고자 함

### 나. 주요골자

- 1)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보완
- 2) 주민세 개인균등할 주민세

가) 당초 : 읍·면지역 3,000원, 동지역 4,000원

나) 변경 : 읍·면지역 5,000원, 동지역 6,000원

3)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위원자격을 변경함

가) 당초 : 시ㆍ읍ㆍ면지역에 둔다.

- 나) 변경 : 시지역에 둔다.
- 4) 농업소득조사위원의 수당과 여비 규정 삭제
- 5) 지방세법 개정에 따른 수정

가) 당초: 제조담배

나) 변경: 담배

6) 인용법령의 변경에 따른 수정

가) 당초 : 도시계획법규정

나) 변경: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

다) 당초: 도시계획구역

라) 변경: 도시지역

#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이해수)

○ 본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의 현실화 계획에 따라 불합리한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2,000원 인상하고, 지방세법 개정 및 도시계획법이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 됨에 따른 인용 법령개정과 일부 불합리한 조 항 삭제 및 변경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 략

6. 심사결과: 일부수정의결(만장일치)

#### 7. 수정안의 요지

**가. 수정일자 및 제안자** : 2003. 11. 14. 자치행정위원회 김학인 위원장외 6인

#### 나. 수정이유:

-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 현실화 계획에 따라 현재 읍·면지역 3 천원과 동지역 4천원으로 되어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지역에 관계 없이 모두 2천원씩 인상하여, 읍·면지역 5천원 동지역 6천원 으로 개정키 위해 제안된 개정조례안으로서, 건실한 지방재정 확보 와 운용을 위해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되나.
- 현재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세금인상시 예상되는 조세저항등을 고려할 시 제안된 금액을 현실성 있게 조정하여 책정하는 것이 경제적 어려움 을 겪고 있는 시민과 효율적 징수 관리를 위해 보다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관련 조항을 수정

#### 다. 수정주요골자

-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분 하향 조정(안 제15조제1항제1호)
  - 당초 : 읍·면지역 3,000원, 동지역 4,000원
  - 제안 : 읍·면지역 5,000원, 동지역 6,000원(지역에 관계없이 2,000원 인상)
  - 변경 : 읍·면지역 4,000원, 동지역 5,000원(지역에 관계없이 1,000원 인상)
    - ※ 첨부: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8. 기타사항 : 없 음

이천시조례 제 호

## 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이천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중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5조제1항제1호중 "5,000원"을 "4,000원"으로 하고, "6,000원"을 "5,000원"으로 한다.

부 칙

이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수정안 조문 대비표

개 정 안	수 정 안
제14조 ⑥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 장이 매회의마다 지정하는 6인의 위원으로 구	제14조 <u>⑥ (개정안과 같음)</u>
<u>성·운영한다.</u> 제15조(세율)① 1. 개인 가. 읍·면지역 <u>5,000원</u> 나. 동지역 <u>6,000원</u>	제15조(세율)① 1. 개인 가. 읍·면지역 4 <u>,000원</u> 나. 동지역 5 <u>,000원</u>
제33조( <b>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·운영등</b> ) ①	제33조( <b>농업소득조사위원회 설치·운영등</b> ) ①(개정안과 같음)
<u>   </u> <u>   </u> <u>   </u>	②(개정안과 같음)
  제34조 <삭 제>	제34조 (개정안과 같음)
제44조 <u>담배</u>	제44조(개정안과 같음)
 제47조(납세의무자) <u>국토의계획및이</u> 용에관한법률 <u>도시지역</u>	제47조(납세의무자) (개정안과 같음)